

2026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입사원(6급) 공채(장애인)

1.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(총 2명)

구분			NCS기반 직무설명서	사회형평채용 장애인전형
채용형 인턴 (정규직 전환시 일반직 6급)	사무직	행정	직무설명서	1
	기술직	토목군 토목	직무설명서	1
		건축군 건축	직무설명서	
		기계	직무설명서	
		전기	직무설명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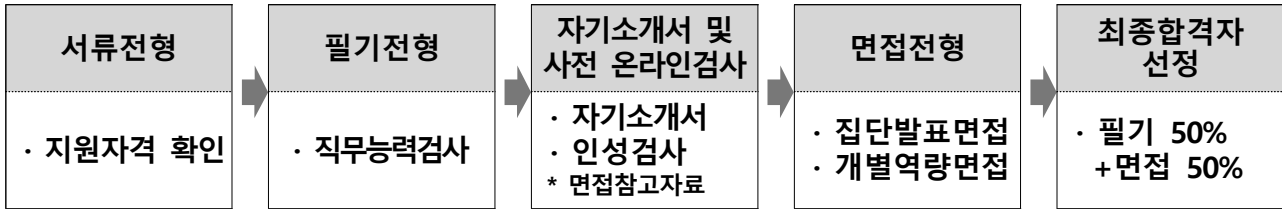
- 채용형인턴은 인턴기간(약 4개월)의 교육 및 근무평가 등 전환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(세부 전환기준 및 일정은 별도 전환계획에 따름)
- 모집분야간 중복지원(예 : '사무직-행정' 분야 지원 후 추가로 '기술직' 지원시 중복지원 처리됨) 하거나, 금회 채용시 일괄 공고하는 5급 공채(일반·보훈/장애인) 및 6급 공채(일반·보훈)와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
- 기술직 지원자는 세부 모집직무(예: 토목군-토목, 건축군-기계 등)를 선택해야 함
- 근무지는 본사(진주 등), 전국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 등임
- 처우 : 기간제근로자(채용형인턴)로서 월 급여 256만원(세전). 이후 정규직 전환시 6급 사원 처우

2. 지원자격

구 분		주 요 내 용
공통 사항	기본자격	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	학력	○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(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, 대학 재학·휴학자 포함) * 공고일 기준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,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
	성별, 신체조건, 연령 등	○ 제한없음
	병역	○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※ 병역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,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'26.12.27까지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
	기타	○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[상세보기 #1] ○ '26.12.28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3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

- ※ 고교졸업예정자의 범위 : '27.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필기시험 합격시 학교장의 졸업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채용형 인턴 임용일('26.12.28(월))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- ※ 6급공채 및 장애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될 수 있음

3. 전형절차 (전형별 합격자 등에 한하여 다음 절차 응시)



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될 수 있음

□ 전형별 절차 세부내용

전형

세부내용

서류전형

○ 전형내용 : 지원자격 확인

○ 합격자 선정 : [2. 지원자격]에 부합하는 경우, 전원 선발

※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필기전형

○ 전형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
○ 전형내용 : 직무능력검사

구분		문항수	시간	평가내용
직무능력검사	NCS 직업기초능력	40문항	60분	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 등

- 기술직 전체 NCS 직업기초능력검사에 공통으로 '안전' 분야 일부 출제

○ 배점비중

- 사무직, 기술직 모두 NCS 직업기초능력(100%)으로 평가하나, 문제유형은 다를 수 있음

○ 합격자 선정 :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4~8배수 선정

최종 선발인원	2명 이하	3~4명	5명 이상
합격자 선정배수	8배수	5배수	4배수

- 과락기준 적용 등으로 합격자 예정인원에 미달할 수 있음

- 동점자 전원 선발

-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% 미만 시 과락(불합격) 처리

자기소개서 제출 및 사전 온라인 검사

○ 전형대상 : 필기전형 합격자

-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자기소개서 제출, 인성검사를 응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

※ 제출된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발생 시 블라인드 처리 [상세보기 #3]

구분	시행방식	내용	비고
자기소개서	온라인 작성·제출	지원포부, 경험·경력활동 및 직업기초능력 기술	· 평가점수 미반영
인성검사	온라인 필기문답	적극성, 성실성, 적응위험 요인 등 인성 및 적응관련 항목 평가	· 면접 참고자료 활용

면접전형

구분

내용

배점

평가항목

대면면접

· 집단발표면접 (多對多)

- 직무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자료 분석 및 발표에 대해 평가

· 개별역량면접 (多對一)

- 자기소개서, 인성검사 등 기반으로 인성요소 등에 대해 평가

100%

정보해석 및 처리능력, 문제해결 및 논리전개 능력, 직업관, 가치관, 사회적 책임감 등

- 면접전형 평가 결과(가산점 제외) 만점의 40% 미만 시 과락(불합격) 처리

- 면접진행 중 블라인드 위반 시 감점 및 탈락 등 불이익 있음에 유의

※ 면접방식 등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후 홈페이지 안내 예정

최종합격자 선정

○ 최종합격자 선정 : 필기전형 50%(가산점 포함) + 면접전형 50%(가산점 포함)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

- 전형별 평가점수(가산점 제외)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

- 동점자 처리기준(우선선발순) : ①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 등) → ②면접전형(가산점 제외) 고득점자 → ③필기전형(가산점 제외)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, 필기전형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

○ 예비합격자 :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% 운영

-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(27.2.17(수) 16시)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 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하고, 동점자 우선순위에서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점자는 전원 임용하되 차순위 임용예정 인원에서 차감

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(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수 있음)

※ 단, 이전지역인재 결원의 경우 채용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

※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(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하며,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

4. 채용시 우대제도 **[상세보기 #2]**

- **특별우대 가산점** :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 등), 장애인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 가족, 자립준비청년, 이전지역인재 등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
 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적용
 - ※ 특별우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('26.9.28(월))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
- **일반우대, 청년인턴 가산점** : 우대자격증 소지자, 수상경력 보유자, LH 우수/성실인턴 및 탁월인턴 등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또는 서류전형 면제
 - ※ 일반우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('26.9.28(월))까지 취득한 자격(합격일자 기준)에 한해 인정
 - ※ 청년인턴 및 수상경력 가산점은 해당 모집공고에 고지된 가산점 부여기준 및 조건 등을 명시한 경우에만 고지된 기준 및 조건 등에 따라 인정

5. 지원서 접수

□ **접수기간** : '26.9.22(화) 14:00 ~ '26.9.29(화) 17:00

□ **접수방법** : 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
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, **작성 중인 지원서도 마감일 17:00 정각까지 제출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- ※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사항(관련일자, 등록번호 등)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6. 채용목표제

□ **유형 및 목표비율**

대상	이전지역인재	지역균형인재	양성평등
목표비율	30%	35%	30%
적용단계	서류전형 ~ 최종합격자 선정		필기전형

* **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모집분야는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**

※ 채용목표제 적용순서는 이전지역인재 → 지역균형인재 → 양성평등

□ **세부 적용방법**

채용목표 유형	적용방법
고졸 이전지역인재	○ 적용대상 : 최종학력(고졸 이하) 기준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 *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(휴학)중인(졸업 예정자 제외) 자는 포함[상세보기 #4] ○ 적용방법 : 각 전형단계* 및 모집분야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 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순(가산점 포함)으로 30%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* 단,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필기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시 '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-5점 이상' 득점(가산점 포함)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% 이상) -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(셋째자리에서 반올림) ※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모집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
지역균형인재	○ 적용방법 : 전형단계별*로 전체 모집인원**에서 지역균형인재의 합격자 비율이 35%에 미달할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선발 * 단,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필기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시 '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-5점 이상' 득점(가산점 포함)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% 이상) -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(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양성평등	○ 적용방법 : 필기전형* 전체 모집인원**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30%에 미달할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선발 * 단,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시 '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-5점 이상' 득점(가산점 포함) ② 필기전형 합격 최소요건(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% 이상) -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(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* (전체 모집인원) 지역균형인재 및 양성평등 목표적용 시 전체 모집인원은 금회 일괄 공고하는 5급 공채(일반·보훈·장애인) 및 6급 공채(일반·보훈·장애인)의 총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함

*** 고졸 지역인재 정의**

- **이전지역인재** : 최종학력(고졸 이하) 기준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
(국토교통부 「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을 따름)

*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'27.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에 한하여 인정

*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(휴학)중인(졸업예정자 제외) 자는 포함

- **지역균형인재** : 지방대학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포함되지 않음(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따름)

※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채용목표제(이전지역인재, 지역균형인재) 해당 여부만을 표시하게 되며, 오류 또는 허위 입력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, [\[상세보기 #4\]](#)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전형별 주요일정

전형일정		일 시	비고
서류 전형	지원서 접수	'26.9.22(화) 14:00 ~ 9.29(화) 17:00	홈페이지(www.lh.or.kr)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
	합격자 발표	'26.10.15(목) 16:00 이후	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
필기 전형	필기시험	'26.10.25(일)	시험장소 : 서울, 대전, 진주
	합격자 발표	'26.11.5(목) 16:00 이후	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
면접 전형	자기소개서 제출, 사전 온라인 검사 (인성검사), 서류제출 등	'26.11.5(목) 16:00 이후 ~ 11.9(월) 17:00	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
	면접시험	'26.11.16(월) ~ 11.20(금)	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일정, 시행장소(서울 예정), 시험방법 등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	'26.12.17(목) 16:00 이후	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교육, 임용 등		'26.12.28(월) ~	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새소식-채용정보-공지사항) 게시판에 공지
 ※ 필기시험 장소(서울, 대전, 진주)는 입사지원시 선택하며, 장소별 수용인원 한도내에서 입사
 지원서 선(先)제출자에게 우선권 부여

8. 제출서류 안내

□ 입사지원사항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'필기전형 합격자'에 한해 증빙서류 요구

- 증빙서류 제출시기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
- 기한내 미제출시 입사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

□ 제출서류

구 분		제출서류	제출대상
필수 자격	학력 관련 서류	○ 본인 학력상황에 따른 아래 서류 가. (대학 재학 중인 자) 재학관련 증명서(재학/휴학/재적/제적 증명서 등) 나. (고교 졸업자) 졸업증명서, 대학(전문대 포함) 학자금 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 ☞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발급받아 제출(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, 제출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로 신청) 다. (고교 재학 중인 자) 졸업예정증명서	전체 지원자
	장애인	○ (본인이 상이등급기준 해당자)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장애인증명서 *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해야함	전체 지원자
특별 우대	취업지원대상자 (보훈대상자)	○ (본인이 상이등급기준 해당자)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(그 외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* 발급시 제출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 필수 기재	해당자
	저소득층	○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증명서	해당자
	북한이탈주민	○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해당자
	다문화가족	○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기타 국적취득 자료 등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*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	해당자
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○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*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	해당자
	이전지역인재	○ 최종학교(고졸 이하) 졸업(예정)증명서 * 필요시, 재학(휴학)·제적증명서 등 추가 징구	해당자
일반 우대	자격증	○ 가산점 부여대상 자격증 증빙서류	해당자
	공모전 수상자	○ 가산점 부여 대상 공모전 수상내역 증빙서류	해당자
지역균형인재 채용목표제		○ (대학 재학 중인 자) 재학관련 증명서(재학/휴학/재적 증명서 등)	해당자
병역사항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		○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	전체 지원자

※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병역사항 등 :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[필기전형 발표일('26.11.5(목)) 이후 발급분에 한함]

※ 입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만 제출받으며, 제출 서류 등은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9. 이의신청 안내

- **접수기간**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('26.12.17(목)~'27.1.1(금))
- **접수방법** : 「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 - 새소식 - 채용정보 - 공지사향」 게시글 에서 신청
- **처리안내** :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(단,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[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]
 - 1)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사항
 - 2) 응시자 정보, 출제위원·평가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, 지적재산권(출제기관)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-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10. 채용서류의 반환, 역량진단 보고서 제공

- **신청대상** : 최종 불합격자 중 채용서류의 반환,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자
※ 청구하지 않는 경우 청구기한 이후 파기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)
- **청구기한**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('26.12.17(목)~'27.1.1(금))
- **청구방법** : 「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 - 새소식 - 채용정보 - 공지사향」을 통해 확인
- **반환 및 제공 일정**
 - 채용서류의 반환 :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송(관련법에 의거 온라인 접수 서류는 미해당)
 - 역량진단 보고서 : 청구기한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메일 발송

11. 유의사항 안내

- 입사지원서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·변조 등 행위 발생 시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이전지역 및 지역균형인재 해당여부, 자격증, 특별 우대 관련 증명서 등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또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발견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 등)
- 시험장소, 시험내용, 감독관/면접관 등에 대해 사진촬영·화면캡처, 녹음·녹화 등으로 대외공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 합격자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별 득점점수 및 커트라인은 필기전형에 한해 공개하며, 최종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합니다.

-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및 재직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예비소집 및 임용식, 입사교육 미입소 등 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응시자격 등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 및 일정은 별도의 전환계획에 따르며,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,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 임용이후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 대해 신고 하여야 하며,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예비소집시 관련된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.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예비소집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- 입사시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취소 등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입사포기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기회를 부여합니다.
 - 예비소집 및 임용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확인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 -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입사포기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- 입사지원서 제출 시 필기전형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금번 채용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장애인 모집단위로 원서를 접수 하는 경우에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장애인 모집 단위가 아닌 일반·보훈 모집단위로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 -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시행
-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및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.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, 채용시자격을 제한하며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채용비리 또는 합격자 선정 오류 등으로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구제함을 안내드립니다.
-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**채용공고 및 FAQ를 충분히 확인**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 콜센터(02-2038-6740, 6741, 67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·답변하지 않으므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채용설명회 안내

- (방식)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채용 설명회
- (기간) '26.9.22(화) ~ '26.9.23(수), 2일간
- (참여인원) 1일당 선착순 500명
- (세부내용) ① 오픈채팅방 참여자 대상 채용변경사항 안내, 직무소개
② 채용관련 질의 및 채용담당자 답변

* 세부 운영시간 및 참여방법 등은 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를 통해 안내예정

2026. 9. 15.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

상 세 보 기

[상세보기 #1]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

□ 인사규정 제9조(채용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삭제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5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6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)

[상세보기 #2] 채용 우대사항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 내역

□ 채용 우대사항

구분	대상	해당자	가 산 점 수	비 고
특별 우대 가산점	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 상자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 퍼센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가 점 등 적용
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 증장애인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중증장애 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를 추가 가산	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해야함
	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 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	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
	이전지역인재	「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이전지역(경남·울산)인재	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	
	북한이탈 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	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	
	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의 다문 화가족	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	
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	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에 한해 적용
일반 우대 가산점	자격증	고급자격(사무, 기술사(기술), 건축사(건축))	서류전형 면제	고급자격 : 한국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국제 재무분석사(CFA) 3차합격
			필기전형 만점의 10퍼센트	
			면접전형 만점의 5퍼센트	
	수상경력	공모전 1등상 수상자	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5퍼센트	※ 가산점 부여 공모전 - 대학생주택건축대전, 국토기술대전(舊국토개발 기술대전) ※ 수상팀당 2인까지 인정 ※ 필기전형 가산점은 작품 제출 50팀 이상 시 적용
		공모전 2등상 수상자	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	
		공모전 3등상 수상자	서류전형 면제	
		공모전 4등상 수상자	서류전형 면제	
청년 인턴 가산점	청년인턴 경험자	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	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	※ 지원한 청년인턴 채용공고 문에 고지된 가산점과 상이한 경우, 청년인턴 공고문 기준에 따르며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
		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	서류전형 면제	
		성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	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	

- *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서류전형 가산점과 상관없이 서류전형 면제
- *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,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
- *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 및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
- *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.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
- * 수상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하며, 우대는 3년 내 1회에 한함
- * 수상경력 가산점은 공모 시 가산점 부여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분야 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
- * 서류전형 면제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적용
- * 우대사항 중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('26.9.28(월))까지 취득한(합격일자 기준) 자격에 한해 인정
- *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'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('26.9.28(월))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(출생일 : 1991.9.29.~2008.9.28)

□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고급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

모집분야			해당 고급자격증 및 분야
사무직	행정		한국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국제재무분석사(CFA) 3차합격
기술직	토목군	토목	(기술사)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, 도로 및 공항, 상하수도, 수자원개발, 지적, 지질 및 지반, 철도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토목시공, 토목 품질시험, 항만 및 해안, 해양, 건설안전, 농어업토목
	건축군	건축	(기술사) 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 (건축사) 건축사
		기계	(기술사) 건축기계설비, 기계, 건설기계, 공조냉동기계, 산업기계설비, 소방, 가스
		전기	(기술사)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소방, 전기안전, 정보통신

*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,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

*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('26.9.28(월))까지 취득한(합격일자 기준) 자격에 한해 인정

[상세보기 #3] 블라인드 위반 관련 내용

□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: 블라인드 처리

① 개인 신상정보 : 기재불가

- 출신학교, 출신지, 나이, 성별,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종교, 이름, 가족관계, 재산 등

구분	위반사항	위반 예시
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	출신 학교	(기준) 출신학교를 언급하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- 한국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저는 설계에 관한 부분을 ~ -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~
	출신지	(기준) 출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을 빛낼 수 있는 업무가 하고 싶어 ~
	나이	(기준)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- 저는 ~ 29세 지원자입니다. - 제가 22세가 되던 해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자원봉사를 ~
	성별	(기준)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(병장, 카투사, 의경, 병사) 등 특정 성별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(위반 예시) - 카투사로 활동하며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~ - (통신병, 운전병 등(간부가 아닌 병사의 보직))으로 복무하며 ~ - (훈련병, 이병, 일병, 병장)시절 훈련중에 ~ - 언니, 오빠들의 친한 동생이 될 수 있었으며 ~ - 행복주택 사업에 사촌 형이 수혜 대상이 되어 ~
	신체 조건	(기준) 신체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185cm가 넘는 큰 키를 이용하여 ~
	혼인 여부	(기준)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며 ~
	종교	(기준) 종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- 교회 청년부로 활동하며, 실수를 연발해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~ -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~ - 사찰에 가서 스님들, 보살님들과 함께 신자님들을 돕다보니 ~
	이름	(기준) 인적사항 입력란 외에 심사위원이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- 입사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신입사원 홍길동이 되겠습니다. - 아이디어뱅크 홍길동이 되고 싶어 ~ - "친절한 길동씨"라고 불리곤 했습니다.
	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	(기준) 가족 및 친인척의 LH 및 유관기관 재직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(위반 예시) -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~ - LH에 재직 중인 이모부의 말씀을 듣고 ~

② 경력 및 경험사항 : 기관명 기재 가능(부서명 및 위치 함께 기재 불가)

구분	기재사항	위반 예시
기재가능	기관명 또는 부서명	(기준) 자기소개서 및 경력·경험 란에 기관명이나 부서명 중 1개 기재 가능 (허용 예시) -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근무를 하면서 ~ - 도로공사에서 토목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~ - ○○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~
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	기관명 + 부서명	(기준) 자기소개서 및 경력·경험 란에 기관명과 부서(지사)명을 함께 기재 할 경우 (위반 예시) -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면서 ~ - 한국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~

* (경력사항)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(직장근무, 공모전 입상 등)

* (경험사항)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(학술연구, 시민단체, 봉사단체 등)

[상세보기 #4] 지역인재 상세내역

□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

1. 지역인재 개념

- (정의)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
 -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(예정)인 자는 제외
 -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(휴학)중인(졸업예정자 제외) 자는 포함

※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: 4년(4년제의 경우 4년=8학기, 5년제의 경우 5년=10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※ 이전지역 :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를 말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함.

2. 이전지역 대학의 범위 :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)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-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3.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)

(1)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- ㉓ 이전지역에 위치한 『고등교육법』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- 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(2)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- ㉓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㉔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㉕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㉖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㉗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(3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㉓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㉔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
**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**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□ 지역균형인재 상세내역

1. 지역균형인재의 범위

- 지역균형인재 : 학위과정 유형(학사, 석사, 박사)을 불문하고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**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음**

2. 지방대학의 판단

가. **(지방대학의 판단)**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**원격 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**)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 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의 **본교**
-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**분교**
 - ※ **(‘25년 기준 분교) 건국대(글로벌), 고려대(세종), 동국대(MSE), 연세대(미래), 한양대(ERICA)**
 - ※ 교지분리대학(이원화 캠퍼스)은 분교와 달리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 여부를 판단

예 시

- ㉠ **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**: 지방대학에 해당함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
- ㉡ **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**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-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교지분리대학이므로 본교와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음. 본교 소재지(경기도)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
- ③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은 **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**

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
- ㉠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- ㉡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- ㉢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㉤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경찰대학
- ㉥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·해·공군사관학교
- ㉦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
- ㉧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군 제3사관학교
- ㉨ 「국방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방대학교
- ㉩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
- ㉪ 「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
- ㉫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폴리텍대학 등

- ④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**원격대학**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) 및 **각종학교**(한국예술종합 학교, 순복음총회신학대)는 **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**

※ **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방 소재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**

나. **(권역 구분)** 권역 구분 없이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(예정)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정

※(예) 전남 소재 공공기관이 경북 소재 대학 졸업(예정)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채용 건을 지역균형인재 채용으로 인정